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및 선결제식 지불 수단에 관한 내각부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규정의 취지

선결제식 지불 수단 보유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결제식 지불 수단의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현재 미사용 잔액의 반액 이상 금액의 발행 보증금을 법무국 등에 공탁함으로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 규정의 취지

만일의 경우 선결제식 지불 수단 보유자는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보전된 발행 보증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발행 보증금의 공탁, 발행 보증금 보전 계약 또는 발행 보증금 신탁 계약의 구별

당사의 이용자 자금 보전 방법은 '금전에 의한 공탁'입니다.

4. 선결제식 지불 수단의 발행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지시가 행해져 발생한 이용자의 손실 보상 및 기타 대응 방침

'아타미 해안 자동차도 횟수 사용권'을 도난 또는 분실 등에 의해 제삼자가 이용한 경우,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타미 인프라 매니지먼트 합동회사